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23일,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6.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만희의원)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근거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를 설립하였으며, 가축방역사와 축산물 위생검사원은 가축전염병 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방역 현장이나 도축장에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해 봉사하고 있음.

국가는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입·출국 사실 신고 및 소독·검역 의무를 부과함.

그런데 소독 및 검역 의무 적용 대상자인 가축방역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의2에 별도로 명기하여 소독 및 검역 의무 적용 대상자임을 명확히 하였으나,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동법 제5조제6항제7호의2에 ‘도축장의 종사자’로 임의 분류하여 소독 및 검역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국 해외여행 시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자에 방역본부 가축방역사와 함께 축산물위생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을 추가로 명기함으로써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5조제6항제3호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임재금)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사람 중 가축의 소유자등, 가축방역사 등에게 출입국 사실 신고 의무 및 소독·검역 의무(이하 ‘신고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 의무의 부과 대상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법은 ①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②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③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중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 가축방역사, ⑤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사람, ⑥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사람, ⑦ 가축시장의 종사자, ⑧ 원유(原乳)를 수집·운반하는 사람, ⑨ 도축장의 종사자 등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신고 등 의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 가축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한편,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으로서 가축이 육류가 되는 최초단계인 도축과정에서 도축장 위생관리 및 내장·지육·림프절검사를 통한 인수공통전염병을 검색하여 생산단계에서 부적정한 육류가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검사원은 도축장에서 근무하며 가축과 직접 접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고 등 의무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재 실무상으로는 ‘도축장의 종사자’로 임의 분류하여 검사원에 대하여 신고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검사원을 신고 등 의무의 대상자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규제의 명확성과 가축전염병 예방 관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가축시장·가축사육시설 또는 도축장에 들어가 가축 질병 예찰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사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검사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신고 등 의무의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국 해외여행 시 신고 등 의무 대상자에 검사원을 추가로 명기함으로써 의무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준병)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